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99
----------	-------

발의연월일 : 2025. 9. 30.

발 의 자 : 문대림 · 김한규 · 이건태
윤준병 · 김영환 · 위성곤
김준형 · 이소영 · 정일영
안도걸 · 정준호 · 한준호
송옥주 · 진성준 · 박민규
박균택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자원 조성을 지원하고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 및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운영 중이며, 제주도 지정면세점은 구매 가능 물품과 구입 횟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품목은 17개로 정하고 연 6회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법」상의 타 보세판매장에서 특정 품목(마약, 도검류 등)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제한 한도는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변국인 중국의 하이난이나 일본의 오키나와 등 주요 관광지는 내국인 면세점에서 더 많은 품목을 제공하고 구매 횟수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은데, 제주도 지정면세점은 2002년 개점

이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이에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품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침체된 제주도 관광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13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13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관세법」 제196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 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주 도여행객(이하 이 조에서 “제 주도여행객”이라 한다)이 「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에 따른 면세품판매장 (이하 이 조에서 “지정면세점” 이라 한다)에서 <u>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물품</u> (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 여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 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 소비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 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 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 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 ----- ----- ----- ----- ----- ----- ----- 「관세법」 제 <u>196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품</u> - ----- ----- ----- ----- ----- ----- ----- ----- ----- -----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